

【 7 】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출일자 : 2004. 9

제출자 : 양주시장

□ 제안이유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6727호)이 2002.8.20일 제정되어 2003.8.27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 설치한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 조례중 “용어의 정의” 및 “기금의 조성” 조문을 동법 시행취지와 맞추 어 양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제1호 영업자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동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자를 추가(안제2조제1호)
- 나.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제1호 기금의 재원조성을 건강 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시 귀속분 추가(안제3조)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자를 말한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동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시귀속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생략)</p> <p>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현행과 같음)</p> <p>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p>
<p>제3조(기금의 조성)(생략)</p> <p>1.(생략) 〈신설〉</p> <p>2.(생략)</p> <p>3.(생략)</p>	<p>제3조(기금의 조성)(현행과 같음)</p> <p>1.(현행과 같음)</p> <p>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시 구 속분</p> <p>3.(현행 제2호와 같음)</p> <p>4.(현행 제3호와 같음)</p>

第36編 保健·醫事 第2章 保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2 장 영업

제 4 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조 (영업의 허가 등) ① 제 4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6 조 (영업의 신고 등) ① 제 4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 4 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총 166)

第36編 保健·醫事 第2章 保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 (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제32조 제1항 각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에 귀속된다.

(총 147)